

제6편 온천법

우리나라에 아직도 온천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많은 분쟁이나 온천수 유지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당시 내무부가 주선하여 온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온천법은 온양온천의 온천 상황을 기본으로 한 즉수온, 개발, 시설, 보호, 이용, 용출량 제한, 온천지구 제정 등을 법으로 명시한 온천법을 법률 제 3377호로 제정 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溫 泉 法

1981年 3月 2日
法律 第 3377號

第 1 條 【目的】 이 법은 溫泉의 適切한 보호와 效率的인 利用 開發을 도모함으로써 公共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溫泉”이라 함은 地下로부터 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溫水로서 그 成分이 人體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溫泉地區”라 함은 溫泉原 賦存地域을 中心으로 溫泉의 公共的 利用增進과 溫泉利 用施設 및 環境의 整備를 위하여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를 말한다.

第 3 條 【溫泉地區의 指定등】 ①서울 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溫泉의 適切한 보호와 效率的인 利用·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溫泉地區를 指定하거나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地區를 指定 또는 變更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溫泉地區를 指定하거나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 4 條 【溫泉開發計劃】 ①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地區가 指定된 때에는 그 地區를 管理하는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溫泉開發計劃을 樹立하여 道知事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特別市·釜山市의 경우에는 서울特別市·釜山市長이 위 開發計劃을 樹立한다.

② 溫泉地區가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 自然公園法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地域, 觀光事業法 第46條 및 第49條와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관광지 또는 工業配置 第16條 및 第17條의 規正에 의한 誘置地域, 公園計劃, 觀光地造成計劃·開發計劃 또는 工業配置計劃에 적합하게 溫泉開發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③ 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郡守는 第3條 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溫泉地區가 變更된 때에는 당해 溫泉開發計劃을 이에 적합하도록 調整하여야 한다.

第 5 條 【掘鑿許可】 ① 溫泉地區안에서 溫泉을 湧出 시킬 目的으로 土地를 掘鑿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溫泉의 湧出量을 增價시키기 위하여 湧出口를 擴大하거나 深度를 增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許可를 받을 수 있는 자는 掘鑿할 土地를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道知事는 溫泉을 工業用 또는 煖房用에 사용할 目的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行政 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6 條 【許可의 制限】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既存 溫泉의 湧出量·溫度 또는 成分에 顯著한 影響을 줄 憂慮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既存 溫泉의 湧出量이 그 地域의 制度를 초과하는 경우
3. 環境을 汚染시키거나, 自然生態率를 害칠 憂慮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溫泉의 適正管理 또는 都市計劃 기타 公共計劃事業에 支障을 주는 등 다른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明示한 西面으로써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7 條 【許可의 取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取消할 수 있다.

1.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工事を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着手후 6月 이상 工事を 中止하였을 때, 다만, 天災地變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第6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第 8 條【動力裝置의 許可】 ① 溫泉의 探水를 위하여 動力裝置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動力裝置로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로 인하여 다른 溫泉에 顯著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事由를 明示한 書面으로써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9 條【溫泉을 湧出시킬 目的이외의 土地掘鑿者자에 대한 措置】 道知事は 溫泉地區안에서 溫泉을 湧出시킬 이외의 目的으로 土地를 掘鑿함으로써 溫泉의 湧出量·溫度 또는 成分에 顯著한 影響을 미칠 경우,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土地를 掘鑿한 者에 대하여 그 影響을 沮止 함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道知事は 그 事業의 許可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原狀復舊命令】 道知事は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地를 掘鑿하였을 때, 許可를 받아 掘鑿한 場所에서 溫泉이 湧出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土地를 掘鑿한 者에 대하여 原狀復舊를 命할 수 있다.

第11條【源泉의 利用許可】 ① 公共의 活用 飲用に 供하거나 工業用 또는 煖房用に 사용하기 위하여 溫泉을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道知事は 溫泉의 이용으로 인하여 保健·衛生上 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事由를 明示한 書面으로써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2條【利用許可의 取消 또는 制限】 道知事は 溫泉의 이용으로 인하여 保健·衛生上 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許可를 取消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溫泉利用施設의 管理者에 대하여 溫泉利用의 制限 또는 有害에 대한 豫防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3條【溫泉의 水質檢査】 ①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의 利用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道知事が 행하는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水質檢査 內容을 利用施設안의 보기 쉬운 場所에 揭示 하여야 한다.

第14條【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등】 ① 道知事は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溫泉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溫泉의 成分·溫度量 및 利用狀況 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溫泉의 利用許可를 받은 者 또는 利用施設의 管理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關係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할 때에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에게 이를 揭示하여야 한다.

第15條【利用施設 등의 改善命令】 道知事は 溫泉의 利用增進과 公衆衛生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溫泉利用施設의 管理者에게 溫泉利用施設 또한 管理의 改善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6條【溫泉의 共同給水】 ① 道知事は 第1條의 目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長·郡守·法人·綜合 또는 個人으로 하여금 共同給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正에 의하여 共同給水를 할 수 있는 者의 資格要件 및 共同給水에 따른 使用料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7條【溫泉發見者의 申告】 ① 溫泉地區 이외의 地域에서 溫泉의 湧出 또는 探査로 온천을 발견할 자는 管轄 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는 溫泉으로 이용할 價値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遲滯없이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8條【溫泉發見者의 惠澤】 第17條 第1項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는 第5條 第1項 및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掘鑿許可 및 溫泉 利用許可를 優先하거나, 발견 및 掘鑿에 所要되는 費用 또는 利用施設費를 優先하여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第19條【土地에의 出入調査등】 ① 溫泉地區 이외의 地域에서 溫泉을 探査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 條에서 이하 같다.)·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가 第1項의 許可를 할 때에는 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有者나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調査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가 발행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 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有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調査등을 舉絶하지 못한다.

第20條【損失補償】 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出入·調査 또는 障礙物의 變更·除去行爲로 인하여 他人의 土地 또는 物件에 損失을 입힌 때에는 그 所有者나 기타 權利者에게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의 基準과 기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手數料】 第5條 第1項·第8條 第1項 및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나 第13條의 規

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22條【權限의 委任】 道知事는 이 法에 規定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23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罰則】 第5條 第1項 또는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條【罰則】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0條·第12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正當한 事由없이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4.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여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한 者
5. 正當한 事由없이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第2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에 違反한 者
2. 第13條 第2項의 규정에 違反한 者
3. 正當한 事由없이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 보고를 한 者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이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 내지 第27條의 위반 行爲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0日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溫泉을 掘鑿한 者, 動力裝置를 設置한 者 또는 溫泉을 公共의 活用 또는 飲用, 工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이내에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 【**經過措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는 第5條 第1項·第8條 第1項 또는 第1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溫泉法施行令

第 1 條 【**目的**】 이 영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條 【**溫泉地區의 指定·變更**】 ①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1년 9월 15일~~ **1981년 9월 15일** **大統領令 第10354號**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환경의 정비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온천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지구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2.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이용일 불가능한 경우
3.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③ 도지사는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와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 3 條 【**溫泉地區의 告示**】 ①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내용을 30일 이상 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4 條 【**目的**】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이용시설계획
4. 온천관리계획

第 5 條【溫泉開發諮問委員會】 ① 서울특별시·직할시·시장 또는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 6 條【掘鑿許可申請】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향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설계도서

第 7 條【動力裝置의 設置許可申告】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당사의 동력이상의 동력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第 8 條【溫泉의 利用許可申請】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第 9 條【利用許可基準】 ① 법 제1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온천수를 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수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업지역안에서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第10條【許可를 위한 調査依頼】 도지사는 법 제5조 제1항, 법 제8조 제1항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第11條【許可內容의 揭示】 법 제5조 제1항·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내용
2.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년월일
4. 시공자
5. 착공 및 완공예정일

第12條【着工동의 申告】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는 공사를 착수·중지·재개·완공 또는 폐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의 설치를 완공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온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13條【溫泉의 水質檢査】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는 연1회로 하되, 도지사는 그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실시 10일전에 검사를 받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4條【共同給水者의 資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 공의 소유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第15條【共同給水의 使用料】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16條【土地에의 出入·調査許可】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조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토지출입·조사허가 신청서를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종류·명칭·소재지 및 가격등을 기재한 장애물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7條【損失補償】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해 토지 또는 물건의 손실부분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한다.

第18條【手數料】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굴착허가 : 온천공당 3만원
2. 온천의 용출구확대 또는 심도 증가허가 : 온천공당 1만 5천원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1개소당 2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1개소당 1만원
5.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 : 1만원
6.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第19條【權限의 委任】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자에 대한 조치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 등의 개선명령

第20條【施行規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